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 2024 - 제9호

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 모집 공고

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수급자의 욕구 및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복지용구 급여품목을 확대하고자「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」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> 2024년 8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I 사업개요

□ 목적

○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신기술(AI, IoT 등) 활용 품목에 대한 급여 필요성 및 적정성 등 검증으로 복지용구 급여 확대 추진

□ 주요 내용

- (대상품목) AI, IoT 활용 품목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품목 3~5개 이내 ※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 품목 선정 평가(8월말) 이후 참여 사업소 대상 통보 예정(9월)
- (사업기간) '24.9월 ~ '25.8월(12개월) ··· 필요 시 최대 12개월 연장
- (사업지역) 인천경기 7개 지역

< 시범사업 지역 >

- ① 고양시, ② 수원시, ③ 용인시, ④ 부천시, ⑤ 성남시, ⑥ 남양주시, ⑦ 인천 남동구
- * 복지용구 실사용자. 복지용구사업소 수. 인정자 수 등을 종합하여 지역 선정
- (사업대상) 시범사업 지역 내 실거주 중인 장기요양 '재가 급여'수급자 ※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참여 비대상
- (급여방식) 품목별 1개씩 '구입' 가능, 복지용구 연 한도액(160만원) 범위 내 혼합(본급여+예비급여) 사용, 본인부담률 30% 적용(감경적용 불가)

Ⅱ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

□ 신청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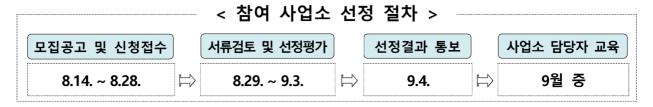
- (신청자격) 시범사업 지역 소재 복지용구사업소
- (신청제한) 아래 2개 경우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
 - 장기요양기관 직전 평가 결과 '미흡' 복지용구사업소
 -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행정처분* 이력이 있는 복지용구사업소
 - * 「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」제29조(행정처분의 기준)에 따른 처분

□ 신청방법

- (접수기간) '24.8.14.(수) ~ 8.28.(수), 15일간
- (제출서류) 예비급여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1부 … [별표1] 참조
- (접수방법) 팩스(033-749-6378) 또는 전자우편(0059500@nhis.or.kr) 접수

< 신청 시 유의사항>

- ※ 공단에 제출된 신청서 등은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으며,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제외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
- ※ 신청서에 작성하는 모든 정보는 <u>신청일 기준으로 작성</u>하고, 인력현황은 관할 **지자체에 최근 신고된 인원 수** 기준으로 작성
- (선정대상) 시범사업 지역 내, 총 24개 이내 복지용구사업소
- **(선정방법)** 선정기준*에 따른 정량평가를 통한 종합평가 실시
 - *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, 인력현황, 기관지정기간 등
- **(결과통보)** <u>'24.9.4.(수)</u>까지 기관별 통보 ※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**(문의)**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복지용구2팀(☎ 033-736-3883, 3882)



참고

복지용구사업소 역할 및 1.2차 시범사업 주요사항 비교

□ 주요 역할

-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 제품 급여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제출
- 제품 사용법 안내·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
- 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(본인부담금 제외 금액) 청구

사업소 업무 흐름도 > ① 수급자 상담 및 급여계약 체결 ② 급여제공 (설치·교육) - 수급자 욕구 파악 및 자격 제한사항 확인 방문 설치 및 사용법 안내 - 공급계약 체결 및 서식(동의서 등) 작성·제출 기록지 작성·제출 A/S 등 상담 제공

- ① (급여계약) 수급자 자격(일반, 의료 등) 및 품목별 사용 제한사항확인* 후 공급계약 체결
 - *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품목별 수급자 참여 가능여부 확인 가능
- ② (설치·교육) 수급자별 방문 설치 및 사용법 교육 실시
- ③ (모니터링) 총 1회 '방문 또는 유선' 점검
- ④ (사후관리) 제품 사용 관련 문의, A/S 등 발생 시 조치

□ 예비급여 1·2차 시범사업 주요 비교

구분	1차 시범사업	2차 시범사업	
사업기간	'23.7월 ~ '24.6월(1년)	'24.9월 ~ '25.8월(1년)	
시범지역	전국 6개 지역 (지역본부별 1개 지역)	인천경기지역본부 7개 지역	
대상품목	2개(구강세척기, 기저귀센서)	3 ~ 5개 이내	
공급방식 (본인부담률)	선정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한 '구입' 방식 (본인부담 30%, 감경 미적용)		
유동미용 및		- 제품가격에 유통비용* 포함 * 본 급여 제품 유통비율 기준과 동일적용 - 1회 (방문 또는 유선)	

[별표 1]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

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(사업소용)

사업소명			기관기호	
대표자명			기관지정일	20
사업소 정보	주소	□ 경기도 고양시 □ 경기도 수원시 □ 경기도 용인시 □ 경기도 부천시 □ 경기도 성남시 □ 경기도 남양주시 □ 인천광역시 남동구 (우편번호)		
		(
	담당자명		전화번호 (휴대전화)	
	E - Mail		직전	□ 최우수, □ 우수, □ 양호,
	인력현황	총원 () 명	기관평가 결과	□ 보통, □ 없음
	품목 취급현황	□ 구입(품목수:	/ 10개) 🗆 🗆	배여(품목수: /6개)
		□ 구입 또는 대여(품목수: /2개)		

[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]

- 1. 사 업 명: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(사업기간: 2024년 9월 ~ 2025년 8월)
- 2. 주요사항
-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(이하 "사업소"라 한다)는 사업기간 동안 ^①공급계약, ^②설치 및 교육, ^③수급자 모니터링(1회), ^④사후관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- 공단은 사업소가 수급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단부담금(제품가격의 70%)을 지급합니다.
- 사업소는 「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지침」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, 허위 청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비용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위의 안내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: (서명 또는 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